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83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김문범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543,6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4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D는 2012. 3. 30.경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 2) E는 2019. 12. 3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F은 2020. 4. 20.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 3)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63700호 양수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21. 8. 12.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8,928,243원 및 그중 8,033,742원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 처분

- 1)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4. 26.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2) 이 사건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0. 11. '2019. 10. 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D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채무초과의 정도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채무초과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직후, D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2776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48,000,000원, G조합 조합원 예탁금 10,386,453원, I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 84,781,276원, 합계 143,167,729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원고의 2022. 11. 8.자 준비서면), 반면 D의 소극재산은 I에 대한 약관대출금 채무 79,400,000원, E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 8,033,742원의 합계 87,433,742원에 불과하여, D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에는 J가 여전히 제1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130,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담보채무 역시 사해행위 직후 D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D의 소극재산은 217,433,742원(=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위 ①항 인정 소극재산 87,433,742원)에 이르러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J의 위 피담보채무액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J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D를 채무자로 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및 피고를 채무자로 한 제2 근저당권의 설정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D로부터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고 그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만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D를 대신하여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피담보채무의 인수 또는 대위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인 D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하더라도 그 금액에 관하여 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결국 최종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D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가 인수 또는 대위변제하기로 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역시 D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D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경 제1 근저당권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함으로써 D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된 이상,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

별지